

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청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6년 12월 12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로과장 배치열)

□ 제안이유

- 관리인력 부족과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건설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관리 위탁하여 예산절감과 지정벽보판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
 - 위탁예정 시기 : 2007. 2월중
 - 위탁예정 기관 : 미정(공개모집)
 - 위탁대상 시설 : 부천시 지정벽보판
- 지정벽보판 현황

(단위 : 개)

계	원미구	소사구	오정구
148	76	26	46

- 대부분 노후된 시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
- 민간자본으로 노후된 시설 교체 및 부족한 시설 확충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받을 예정(업체 : 광고면사용, 유지관리)

□ 동의 요구내용

- 부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지정벽보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□ 위탁업무 추진계획

- 시의회 동의 → 수탁기관 모집공고 → 수탁기관 선정 → 민자유치 및 위탁 계약 체결 → 시설물 설치 → 수탁기관 운영 개시

□ 위탁방법

-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격자 심의 선정(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: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벽보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?	○ 민간위탁 관리면에서 철저한 지도,감독과 건설한 업체를 선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함.
○ 규격이나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?	○ 일정한 규격은 없으며, 규격이나 재질, 모델 등을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것임. 또한 수탁업체의 선정 또한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를 것임.
○ 수탁기관 선정의 지역범위는 ?	○ 경기, 인천 지역으로 제한하여 관리·운영 측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 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

의안 번호	제63호
의결 년월일	2006.12.21 (제132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13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사유

○ 관리인력 부족과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건설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관리 위탁하여 예산절감과 지정벽보판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

- 위탁예정 시기 : 2007. 2월중
- 위탁예정 기관 : 미정(공개모집)
- 위탁대상 시설 : 부천시 지정벽보판

○ 지정벽보판 현황

(단위 : 개)

계	원미구	소사구	오정구
148	76	26	46

- 대부분 노후된 시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
- 민간자본으로 노후된 시설 교체 및 부족한 시설 확충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받을 예정(업체 : 광고면사용, 유지관리)

□ 동의 요구내용

- 부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지정벽보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□ 위탁업무 추진계획

- 시의회 동의 → 수탁기관 모집공고 → 수탁기관 선정 → 민자유치 및 위탁계약 체결 → 시설물 설치 → 수탁기관 운영 개시

□ 위탁방법

-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격자 심의 선정(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: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